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3-1984호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2013.02.0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6호(2019.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3호(2020.11.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7-45호(2017.06.1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141호(2021.07.0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로 의견서【제목, 내용, 주소, 성명(날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3. 12. 07. ~ 2023. 12. 21. (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 1) 사업명칭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3-31번지 일대
- 3) 사업면적 : 33,154.5㎡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최병선
 -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길 45, 202호(상도동)
- 5)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0개월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30개월
- 6) 건축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3층/지상27층, 7개동, 576세대(임대 98세대 포함)
- 7) 정비기반시설등 : 도로 2,533.5㎡, 공원 7,780.0㎡, 학교 365.0㎡

다.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02-820-9814),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815-2098)

라.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마.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3-199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개정이유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에 따른 재사용 봉투 색상 변경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 색깔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별관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820-1376, FAX: 820-9979, E-mail: hittt1129@dongjak.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